

[정1] 정책제안

토종가축 품종 인정기준시 흑우(내륙흑한우)의 한우 인정

1. 건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김성구 사무관(044-201-2317)

2. 현황 및 문제점

<농업 및 농촌>

- 도축장에서 흑우(내륙흑한우)를 한우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가사육을 기피하여 멸종위험이 가중
- 흑우(내륙흑한우)의 특징
 - 모색은 흑색이고 입 주변에 **흰색 테두리가 있으며**, 비경은 대부분 흑색, 살구(肉)색

<농업제도·정책> : 『축산법』 제2조 제1의2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 한우 품종인정 기준 (3품종) : 한우, 칩한우, 제주흑우
 - 모색 및 비경에 대한 외모특징으로만 한우로 인정하고 있음
 - ※ 흑우(내륙흑한우)에 대한 한우 판정기준 전무

3. 사전협의 내용

- 한국종축개량협회(종개협)의 한우담당자와의 관련문제 중요성 인식
 - 한우 품종등록과 관련 종개협 가축시 방문 및 전화 협의 ("13.6~7)

4. 정책제안 내용

- **관련법령** : 『축산법』 제2조 제1의2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1. 한우 (한국종축개량협회 고시 제2009-11)
 - 가. 품종구분 : 한우, 칩한우, 제주흑우, **흑우(내륙흑한우)**- ※ 모색특징상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①부모가 한우이고, DNA 친자확인검사 결과 친자 확인된 경우, ③한우확인시험법(SNP법, MS Marker법)에 의해 한우로 판별된 경우에는 한우로 인정

5. 정책제안 반영 기대효과

- 흑우(내륙흑한우)가 재래가축의 한우품종으로 법적 인정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한우품종의 유전적 다양성확보와 멸실을 방지

6. 제안자

- 성환후,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063-620-3521, seonghh@korea.kr)

7. 근거과제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과제코드 : PJ009418)

- 체세포 복제기법에 의한 희소한우의 복원 및 유효집단 조성

< 세부연구결과 >

제 목	토종가축 품종 인정기준시 흑우(내륙흑한우)의 한우 인정					
건의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담당자 : 김성구 (☎ 044-201-2317)					
건의분야	축산생명환경					
개선내용 요약	<p>○ 관련법령 : 한우검정기준</p> <p>※ 『축산법』 제2조 제1의2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p> <p>1. 한우</p> <p>가. 품종구분 : 한우, 칩한우, 제주흑우, 흑우(내륙흑한우)</p> <p>※ 모색특징상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①부모가 한우이고, DNA 친자확인검사 결과 친자 확인된 경우, ③한우확인시험법(SNP법, MS Marker법)에 의해 한우로 판별된 경우에는 한우로 인정</p>					
소과제명	체세포 복제기법에 의한 희소한우의 복원 및 유효집단 조성 전산코드 : PJ009418				세부사업명	
세부과제명	체세포 복제기술 적용 희소한우의 복원 및 증식 효율 향상 연구				공동연구	
구분	어젠다	15	대과제	52	중과제	
구분	분야	12	작목	LP014121	기술유형	S03
연구개발자	소속기관	성명	전화번호	E-mail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성환후	063-620-3521	seonghh@korea.kr		
공동개발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고응규	063-620-3535	kog4556@korea.kr		
		김성우	063-620-3524	sungwoo@korea.kr		
		도윤정	063-620-3523	clonea@korea.kr		
		김재환	063-620-3522	jkim3892@korea.kr		
		최성복	063-620-3520	csb3452@korea.kr		
		김동훈	063-620-3510	kd8485@korea.kr		

1. 현황 및 문제점

- 한우검정기준 (농식품부 고시 제2009-362호)
 - 한우기준에 명시된 피모색과 해당소의 부·모의 DNA친자감별로 판단
- 도축장에서 흑우(내륙흑한우)를 한우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여 농가사육을 기피하여 멸실위험이 가중

<현행제도·정책> 『축산법』 제2조 제1의2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 한우 품종인정 기준 (3품종) : 한우, 칩한우, 제주흑우
 - 모색 및 비경에 대한 외모특징으로만 한우 인정하고 있음
 - ※ 내륙흑한우에 대한 한우 판정기준 전무

2. 과제 발굴 배경 및 사전협의 내용

- 한국종축개량협회(종개협)의 한우담당자와의 관련문제 중요성 인식 및 협의
 - 흑우(내륙흑한우)의 품종인정 관련 종개협 한우담당자 가축시 방문 협의 (13.6~7)
 - 한우품종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인식과 국내보유 희소한우의 한우품종인정에 대한 협의

3. 연구결과

- 흑우(내륙흑한우)의 특징 :
 - 모색 : 모색은 몸 전체가 흑색이고 입 주변에 **흰색의 테두리가 있음**
 - 비경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구(肉)색도 나타남
-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 보유 내륙흑한우 사육두수 : 150두
 - 한우검정기준(한국종축개량협회 고시 제2009-11)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축산법」 제2조 제1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제8조 <별표1> “한우 인정기준” 1. 한우 가. 품종구분 : 한우, 칩한우, 제주흑우 ○ 모색 및 비경 - 한우 - 칩한우 - 제주흑우 · 모색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띠며 · 비경 : 대부분 흑색	「축산법」 제2조 제1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제8조 <별표1> “한우 인정기준” 1. 한우 가. 품종구분 : 한우, 칩한우, 제주흑우, 흑우(내륙흑한우) ○ 모색 및 비경 - 한우 - 칩한우 - 제주흑우 · 모색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띠며 · 비경 : 대부분 흑색 - 흑우(내륙흑한우) · 모색 : 모색은 몸 전체가 흑색이고 입 주변에 흰색의 테두리가 있음 · 비경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구(肉)색도 나타남

※ 토종가축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종가축인정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

청하게 되면 심사(현지실사 등)를 거쳐서 최종 인정서를 교부받게 되어 있음

4. 정책제안 기대효과

- 흑우(내륙흑한우)가 한우품종으로 법적 인정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한우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확보와 멸실을 방지
- 흑우(내륙흑한우) 사육농가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 증대 기여

4. 적요

- 흑우(내륙흑한우)를 한우품종으로 인정함으로써 한우 유전자원의 다양성확보와 멸실위기의 품종을 보존·복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참고자료>



<흑우(내륙흑한우) 사진 : 모색 및 비경색>

□ 흑우(내륙흑한우) 국내사육두수

(2013, 축산원 가축개량평가과)

품종	기관			기업			일반			계
	수	거세	암	수	거세	암	수	거세	암	
칠흌	76	1	157	3	11	48	388	257	1,174	2115
흑우	2		19				14	15	76	126

<별표 1>

토종가축별 품종 인정기준

※ 『축산법』 제2조 제1의2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1. 한우

가. 품종구분 : 한우, 칩한우, 제주흑우, **흑우(내륙흑한우)**

나. 외모특징

○ 모색 및 비경

구분	특징
한우	·모색 : 몸 전체가 황갈색(누런빛을 내는 갈색), 담갈색(연한갈색), 적갈색(붉은 갈색)이며 암소의 유방부위, 암·수소의 다리 안쪽, 배 주위는 약간 옅은 색을 나타냄 ·비경 : 살(肉)색임
칩한우	·모색 : 모색은 황갈색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과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 줄무늬(호반모)가 몸 전체에 있음 ·비경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肉)색도 나타남
흑우(내륙 흑한우)	·모색 : 모색은 몸 전체가 흑색이며 입 주변에 흰색의 테두리가 있음 ·비경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肉)색도 나타남
제주흑우	·모색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띠며 ·비경 : 대부분 흑색

다. 실격조건

구 분	세부내용
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반 및 흑반의 지름이 10cm 이상인 개체 ·백모 및 흑모가 전체적으로 발현된 개체 ·외모로 보아 한우로 인정할 수 없는 것 ·DNA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것 ·부정한 방법으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휩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반모가 몸 전체 10%미만인 개체 ·외모로 보아 휩한우로 인정할 수 없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흑우 (내륙 흑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 전체가 흑색이 아닌 개체 ·외모로 보아 내륙흑한우로 인정할 수 없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제주흑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 전체가 흑색이 아닌 개체 ·외모로 보아 제주흑우로 인정할 수 없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 다만, 외모특징상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DNA친자확인검사 결과 부모가 한우인 경우에는 한우로 인정(품종간의 교배 등으로 외모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 등)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업체명 또는 농장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축산업허가제(등록제) 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토종가축 축종(품종)			
	업체 또는 농장 소재지			
	생산규모 또는 사육규모			
	생산계획	축종(품종)	생산규모 또는 사육규모	연간 생산 계획량 (kg 또는 마리수)

「축산법」 제2조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	수수료
	2.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3.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해당없음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토종가축 인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정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토종가축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정내용을 인정기관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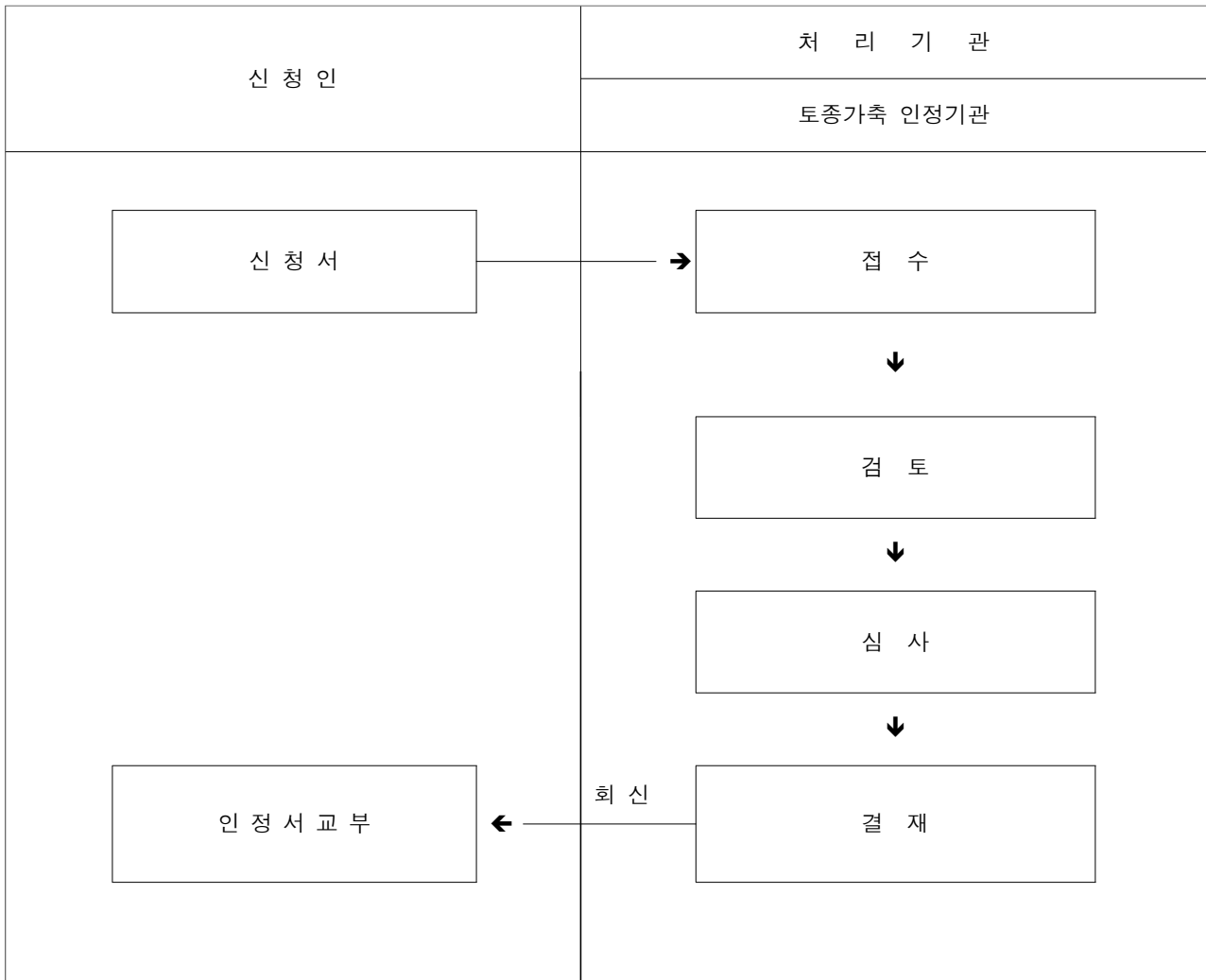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업체명 또는 농장명은 적지 아니하여도 되며, 대표자 설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5. "토종가축의 축종"란에는 인정을 받으려는 토종가축을 적습니다.
6. "업체 또는 농장 소재지"란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8. "연간 생산계획량"란은 연간 생산 계획량을 킬로그램 또는 사육마리수 단위로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정번호 : 제 인정기관명 - 호

토종가축 인정서

인정 축종(품종)	(품종)		
업체명 또는 농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업체 또는 농장 소재지			
생산규모 또는 사육규모			
인정 부가조건			

「축산법」 제2조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종가축 임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장

직인